

○ 사업예산 항목

| 대분류                       | 소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역량강화비<br>(예비 50% / 본 40%) | 강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| 계좌입금 원칙(원천징수)<br>조직 구성원 및<br>이해관계자에게 지급불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문비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비 (계약)                  |   |
| 물품매입비<br>(예비 50%)         | 시제품 재료비<br>(본 30%)         | 판매용 제품이 아닌 시제품<br>제작을 위한 재료 가능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무용품비<br>(월 최대 10만원)       |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<br>(자산성 물품) 구매 불가          |
| 회의비                       | 식비, 다과비<br>(예비 10% / 본 5%) | 1인당 최대 1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내여비<br>(예비 20% / 본 10%)   | 식비, 체험비, 교통비, 숙박비<br>(사무국 승인후 추진)         |
| 홍보비<br>(예비 50% / 본 40%)   | 인쇄비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용 최소화,<br>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<br>지원사업 표지 표기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홍보물품제작비                    | 1개 품목 기준,<br>단가 1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광고선전비                      | 협약기간 내 홍보 완료된<br>건만 집행 가능                 |
| 지급수수료<br>(예비 50% / 본 30%) | 임차비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1,000만원/년<br>(사무국 승인 후 추진)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형자산취득비                    | 사업 기간 중 출원,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|   |

※ 비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 승인을 거쳐 조정 가능(10% 이내, 1개 항목)

\*예산 비율 조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 필요, 사무국 사전 승인 필수

※ 모든 사업비는 조직구성원, 혈연관계, 타 액션그룹,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출 불가

\*이해관계자: 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, 참여(협력)단체 및 법인의 지부,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

※ 사업비 집행에 따른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 첨부, 제출 필수